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22일

농소1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양 *용	양 *용 1980-01-27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(신천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13

